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한상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-69

발의연월일: 2022년 8월 22일

발 의 자: 한상욱, 정장훈, 최세진, 신찬호, 박주선, 이충현, 홍재희, 김순옥, 정정희, 강선영, 박성호, 전철규, 김민석, 고찬양

1. 제안이유

현행 규칙 제27조제3항의 발언 내용에 따른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이나 조치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의장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국회법」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 등

나.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규칙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에 제3항 중 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후 첫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하되, 발언자 수에 의한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며 발언 내용에 따른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”를 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후 첫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하되, 발언자 수에 의한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며 의장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5분 자유발언) ① ~ ② (생 략)	제37조(5분 자유발언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후 첫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하되, 발언자 수에 의한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며 발언 내용에 따른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의장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